

#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검토 경위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
- 제출자: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11. 10.(의안번호 제506호)
- 검토기간: 2023. 11. 13. ~ 11. 30.

### 2. 주요 내용

- 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 추가(안 제2조)
- 기금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수정(안 제3조)
-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및 정비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위원회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사항 정비(안 제12조)
- 포괄 위임 등 불합리한 규정 삭제(안 제13조 등)

### 3. 참고 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, 제68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, 제75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5조~제8조, 제13조 등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, 제7조 등

나. 입법예고: 2023. 9. 27. ~ 10. 17.(접수된 의견 없음)

다. 예산조치: 해당 사항 없음

## 4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·관리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부적절한 문장 및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서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는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<sup>1)</sup>과 해당 법률 약칭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점을 보완하였고, 안 제3조는 기금 관련 용어를 약칭의 방법으로 정비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수입·지출·보관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였는데<sup>2)</sup> 안 제8조에서 「은행법」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중복 규정의 정리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.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의 범위<sup>3)</sup>에서 효율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관련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금 설치 근거가 조례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2)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모두를 중복하여 재수록하거나,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일반 법규의 준용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은 입법 경제상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.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관련 규정을 열거하면 의무적 심의 사항,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, 회의록 작성 정도인데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 규정은 다소간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상위 법령을 위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.